

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안내문

1. 지원대상 및 요건

- **사업장이 아닌 법인 기준으로 상시근로자*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**
 - * 1)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2)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(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) 이면서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
- **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**
 - *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
 - * 2022.1.1. 이후 신규고용된 경우에 한함(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 신규고용으로 보지 않음)
 - *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2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1명, 33인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
- **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**
 - * 매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(단,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) 예) '22.1.1. 입사하여 6.28. 퇴사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
 - * 유의사항: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

2. 지원 기간

-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6개월간 지원하고,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6개월 추가 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

3. 지원 내용

구 분	지급 단가(월)	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(단가 x 6개월)	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(단가 x 1년)
경증남성	30만원	180만원	360만원
경증여성	45만원	270만원	540만원
중증남성	60만원	360만원	720만원
중증여성	80만원	480만원	960만원

* 신규채용 후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전혀 없음

* 단,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(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)의 60%와 단가를 비교하여 더 적은금액 지원

4. 신청 및 접수

-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이후 신청(2022.7.1. 이후부터 신청 가능)
- 온라인 신청: www.esingo.or.kr
- 우편신청 및 방문신청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(대전 서구 청사로 136, 13층)

5. 제출서류

-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장애인 근로자 명부
-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(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)
-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
-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 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
-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(요구 시 제출)

■ 문의사항

지역	담당자	연락처	지역	담당자	연락처
세종특별자치시, 충남(금산)	손희삼 과장	042-620-6204	대전 유성구, 충남(논산, 계룡)	한종현 대리	042-620-6202
대전 중구, 동구, 충남(공주)	황선우 대리	042-620-6272	대전 서구, 대덕구	김소연 대리	042-620-6203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